



3권

데이터법률검토 종합안내서

데이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는 데이터 유통 및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결과물로서, 데이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가격·품질·법적 쟁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3권. 데이터법률검토 종합안내서

CONTENTS



제 1장

추진배경 및 목적

- 1.1. 추진 배경 1
- 1.2. 추진 목적 2

제 2장

데이터 전주기별 법률 검토

- 2.1. 개요 3
- 2.2. 적용 대상 4
- 2.3. 적용 범위 6
- 2.4. 가이드 특징 11

제 3장

종합 사례

13

제 4장

쟁점별 사례

52



1.1. 추진 배경

데이터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글로벌 기업과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각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20년부터는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먼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보면, 안전한 데이터 사용을 위하여 2020. 1. 9.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고 각종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0. 6. 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법률적으로 최초 정의하였고¹⁾, 기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보’의 정의에서 ‘특정 목적성’을 삭제함으로써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²⁾.

다만, 데이터는 무체물이자 기계적 장치를 통해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 권리관계, 매매, 임대차, 하자담보, 손해배상 기타 거래관계 등 기존의 법률관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업계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생태계를 능동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하여 자산으로서 데이터를 바라보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 제1호)

2)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서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주체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로 변경되었다.

고, 근본적으로 데이터 생산, 유통(거래), 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점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또는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 제정 및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왔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의 개념으로 포섭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왔다. 따라서 법 제정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행법에 따른 판례, 조정결정, 상담사례 등 축적된 구체적 사건들은 현재 데이터거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게 충분히 유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줄 수 있다.

1.2. 추진 목적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주체는 공급자, 수요자 또는 거래주선자 등이 있고, 각 행위주체가 관여하는 데이터주기는 다를 수 있으며, 어느 거래에서는 수요자였던 행위주체가 또 다른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어떤 행위주체라도 관련된 데이터 상품이 법률적으로 완결된 상품인지, 데이터 거래로 인하여 공정거래 또는 부정경쟁 등의 이슈에 저촉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실제, 업계에서는 데이터 거래 시 모호한 현행법 해석으로 인해, 생산-가공-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예상되는 각종 분쟁상황 발생을 걱정한다. 일례로, 데이터 산업 현황조사(K-DATA, '19)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모호한 법률에 따른 법적 분쟁 이슈 문제를 꼽기도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데이터 전주기 과정에 걸쳐 법률 분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률 문제는 각자의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에, 상황별로 명쾌한 해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상황별로 저촉되는 현행법령에 대한 안내 또는 실제 분쟁사례, 예상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 종합 안내서에서는 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주체들이 법률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착안, 공급자-수요자, 거래주선자 등 데이터거래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가 위치하는 데이터 전주기 단계를 기본 좌표로 하여 그 단계에 해당하는 법률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55개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자 입장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1. 개요

데이터거래는 데이터상품을 매매, 이용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데이터는 무체물이라는 특성상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의 법률 쟁점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복제가 용이하고 네트워크 외부효과 등에 따른 집중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공정경쟁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먼저 형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³⁾’로서 그 자체로는 ‘물건’으로 볼 수 없어 민법상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관계가 설정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데이터상품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개인정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 등 법률상 제한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 위반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데이터산업 역시 거래상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상품을 생산·판매·구매·사용하는 등 일련의 데이터거래 과정에 행위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데이터가 가진 특수성을 잘 분석하고,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2020. 12. 10. 시행 예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2. 적용 대상

(1) 물적 적용 대상

데이터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우선, 데이터가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수집·이용·결합·제공 등의 처리절차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가명정보 포함), 데이터가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인신용정보란 거래 당사자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을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개인위치정보란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및 그 자체로는 부족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생산 주체의 권리보호가 관건이 된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다.

한편,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행위가 공정 거래 및 공정경쟁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각각 적용된다.



(2) 인적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법령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반 규정과 해당 개인정보의 종류 및 수범주체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달리하는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고,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그 권리의무 및 책임이 다르고, 적용되는 조항 역시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차별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용정보법은 ①신용정보회사(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등), ②본인신용관리회사, ③채권추심업자, ④신용정보집중기관, ⑤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을 신용정보법의 수범자로 정하고 있으며, 각 주체마다 세부적인 적용 규정을 달리한다.

위치정보법은 ①위치정보사업자(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 ②개인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③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등을 주요 수범자로 하며, 신용정보법과 마찬가지로 각 주체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이 적용 법령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데이터거래 참여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데이터 처리 요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3. 적용 범위

(1) 데이터 전주기란

데이터 전주기란 데이터의 생성에서부터 이를 가공, 활용,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데이터의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데이터의 생산 경로를 살펴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살아있는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취득하는 정보, 연구 데이터, 제품이용 통계 등 누군가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 날씨, 경제수치 등 자연현상 또는 산업활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정보 등으로 다양하다.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단계는 위와 같이 취득되거나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집 방법은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하는 반면, 비개인정보의 경우 위와 같은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등으로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데이터를 결합·가공하는 단계는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단계로서 수집된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과 목적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에서부터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데이터 활용은 수집 또는 가공된 데이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미 부가가치가 창출된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해당 데이터상품의 기초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공 요건은 달라질 수 있다.

데이터 폐기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를 없애는 것을 말하며, 계약에 의해 데이터상품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데이터상품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 데이터의 폐기는



다시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2) 데이터 전주기별 법률요소

법률요소란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말한다. 데이터는 매매, 가공, 이용 등 거래 상 권리·의무의 객체로서 소유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며, 특히 데이터 중 개인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수집, 가공, 제공 등 처리가 제한된다. 또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산업 역시 독과점, 불공정경쟁,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은 법률요소는 데이터상품의 법적 완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데이터거래 참여자들은 사전에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소유권

소유권은 민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로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다. 소유권의 객체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물건이며,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자체는 유체물도 아니고,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아니므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다만, 하드디스크, usb 등과 같이 데이터가 담겨 있는 저장매체는 유체물인 물건으로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물건을 절취·은닉·파손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침해로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절도죄·손괴죄 등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처럼 데이터소유권은 현행법의 테두리 속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념이나,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저작권

데이터는 그 자체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데



이터베이스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물로서의 데이터가 보호되며,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누군가가 일련의 정보를 생산 또는 수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후 개별적으로 특정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검색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그는 데이터베이스권리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㉔ 독과점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어떤 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경쟁자를 배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㉕ 부정경쟁

부정경쟁이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유사한 영업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는 금지된다.

㉖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알면서 혹은 중대한 과실로 모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금지된다.

㉞ 동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러한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등을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㉟ 보안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①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②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지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㊱ 수탁자 감독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①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②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㉔ 침해신고·통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 및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

㉕ 정정·삭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까지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㉖ 역외이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국내법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㉗ 아동보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며, 위치정보와 같은 특수한 개인정보는 별도의 법률로써 규율된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기술 발전 등에 따라 위에서 설명한 법



률요소 외에도 다양한 법적 이슈가 등장할 수 있다.

2.4. 가이드 특징

이 가이드는 데이터 전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례를 통해 데이터거래 참여자들이 관련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는 자신의 업무가 데이터 전주기 중 ①생산, ②수집·저장, ③가공·결합, ④활용, ⑤폐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결정한 후, 업무상 제기된 쟁점을 ㉠권리관계, ㉡저작권, ㉢공정경쟁, ㉣사생활보호 등 4가지 범주에서 선택한 다음,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 ㉮부정경쟁, ㉯영업비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 감독, ㉳침해신고·통지, ㉴역외이전, ㉵정정·삭제, ㉶아동보호, ㉷기타 등 세부 항목을 찾아가 그에 해당하는 사례번호를 검색할 수 있다.

종합사례는 법적 쟁점을 최대한 반영한 가공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하였고, 교통·유통소비·문화·금융·의료 등 5가지 산업분야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데이터 관련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쟁점별 사례는 ①사실관계, ②쟁점사항, ③관련법령, ④판결요지(결정, 상담 요지), ⑤시사점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결문은 판결법원 및 사건번호, 상담사례는 그 출처 등을 기재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이용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사례 1】 (교통)

☞ 주제 : 네비게이션/에너지/보험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상품 사례 14

【종합사례 2】 (유통소비)

☞ 주제 : 식품 소비 데이터 활용한 건강 컨설팅 서비스 사례 21

【종합사례 3】 (문화)

☞ 주제 : 검색 데이터를 활용한 영화 기획 사례 29

【종합사례 4】 (금융)

☞ 주제 : 쇼핑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 사례 36

【종합사례 5】 (의료)

☞ 주제 : 진료 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사례 44

▶ 종합사례 1 (교통)

☞ 주제 : 네비게이션/에너지/보험 정보 등을 활용한 자율주행 상품 사례

구분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등					
부정경쟁					
영업비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기타					

[표 3-1] 종합사례 1 : 색인표

● 사실관계

- A회사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X이동통신서비스, Y네비게이션, Z에너지(주유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Y네비게이션, Z에너지는 A사의 계열사).
- A는 B보험사와 연계하여 네비게이션으로 측정된 운전자의 안전운전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임
- A는 고객 위치, 주행거리, 소득수준, 연령, 성별, 차종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3장. 종합 사례

연령별·지역별·소득수준별 주행거리, 주요 이동 경로 등에 관한 데이터상품을 출시하여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에게 판매하고자 함.

● 쟁점사항

[생산]

- 출발지·목적지별 이동경로, 교통량 등 생산된 정보의 소유권 및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해당 여부

[수집·저장]

- X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를 근거로 Y네비게이션, Z에너지 관련 서비스에서 동일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고객 개인정보 수집·저장시 보안조치의무 준수 여부
- C외주업체에 데이터 분석 업무 위탁시 조치사항 및 의무 준수 여부
- X이동통신 고객이 Y네비게이션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X이동통신 또는 Y네비게이션이 경쟁사인 y네비게이션 업체를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가공·결합]

- X이동통신, Y네비게이션, Z에너지 서비스 이용고객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능 여부
- B보험사 보유 정보(연령, 차종 등) 취득 시 보험사 통한 동의로 A사에 제공 가능 여부
- Z에너지 서비스 앱을 통해 수집한 고객개인정보(결재 및 신용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Y네비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X이동통신·Y네비게이션·Z에너지 서비스 앱을 통해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활용]

- 소득수준·연령·성별·차종 등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데이터 상품의 구매자가 외국인(개인 및 법인)인 경우 해당 외국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

-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사점

[생산]

- 출발지·목적지별 이동경로, 교통량 등 생산된 정보의 소유권 및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해당 여부
 - ☑ 출발지·목적지별 이동경로, 교통량 등 생산된 정보 자체는 무체물로서 현행법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위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은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 A가 수집한 데이터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다면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되며, A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됨.

[수집·저장]

- X이동통신 서비스에서 받은 동의를 근거로 Y네비게이션, Z에너지 관련 서비스에서 동일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함. 따라서 네비게이션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별개의 법인(A사의 계열사라 하더라도)이라면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각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고객 개인정보 수집·저장시 보안조치의무 준수 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 특히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법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3장. 종합 사례

- C외주업체에 데이터 분석 업무 위탁시 조치사항 및 의무 준수 여부
 - ☑ 위탁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탁계약은 ①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사항, ②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써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감독해야 함.
- X이동통신 고객이 Y네비게이션만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A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음.
- X이동통신 또는 Y네비게이션이 경쟁사인 y네비게이션 업체를 합병 가능 여부
 - ☑ 합병으로 인하여 네비게이션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은 제한됨.

[가공·결합]

- X이동통신, Y네비게이션, Z에너지 서비스 이용고객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능 여부
 - ☑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①통계작성, ②과학적 연구, ③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및 산업적 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신용정보법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상업적 목적의 가명처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음.
 - ☑ 가명처리의 목적이 해당 데이터를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B보험사 보유 정보(연령, 차종 등) 취득 시 보험사를 통한 동의만으로 A사에 제공 가능 여부
 -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②법률 규정 또는 공공기관의 소관사무 집행 등에 해당해야 하며, 영리기업인 B보험사가 A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따라서 B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외에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Z에너지 서비스 앱을 통해 수집한 고객개인정보(결제 및 신용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Y네비게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A사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이동통신, 네비게이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별도의 법인이라면 각각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Z에너지 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Y네비게이션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함.
- X이동통신·Y네비게이션·Z에너지 서비스 앱을 통해 수집하여 정리한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말하고, X이동통신·Y네비게이션·Z에너지 서비스 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A사 외에는 알 수 없고, A사의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써 영업비밀에 해당함.

[활용]

- 소득수준·연령·성별·차동 등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들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으나, 데이터 자체의 판매 목적은 위와 같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 따라서 데이터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가공된다는 사실 및 가공된 데이터는 상품화되어 제3자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데이터 상품의 구매자가 외국인(개인 및 법인)인 경우 해당 외국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들은 제공뿐만 아니라 처리



3장. 종합 사례

위탁 및 보관 등을 위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등이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제공·처리위탁·보관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①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④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폐기]

-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년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됨.



● **관련법령**

[저작권법]

- 제2조(정의)
- 제92조(적용 제외)
-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제95조(보호기간)

[공정거래법]

- 제2조(정의)
-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정의)
-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종합사례 2 (유통소비)

☞ 주제 : 식품 소비 데이터 활용한 건강 컨설팅 서비스 사례

구분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등					
부정경쟁					
영업비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기타					

[표 3-2] 종합사례 2 : 색인표

● 사실관계

- A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사는 건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C는 A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임.
- A사는 현재 신선식품을 위주로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C가 소비하는 모든 식품 품목을 서비스에 추가하여 해당 C의 식생활 습관에 관한 데이터를



생산한 후 이를 B사에 제공하고, B사는 위 데이터를 분석하여 C에게 필요한 식이요법, 건강관리 포인트 등 건강 컨설팅안을 만들어서 A에게 회신하면 A는 이를 토대로 C에게 식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음.

- 또한 A사는 C와 같은 개인 고객 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을 연령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등을 키워드로 분류하여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식품 추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으며, 대규모 물류 및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법인 D와의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쟁점사항

[생산]

- A가 생산한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식품 소비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 B가 생산한 건강 컨설팅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 A와 B의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집·저장]

- A가 수집한 C의 식생활 관련 데이터가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가 C의 식생활 관련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B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의 범위
- 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갖추어야 할 보안조치 수준

[가공·결합]

- A가 가공한 가명정보를 B가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B에게 개인정보의 가공·결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요건

[활용]

- A가 보유한 C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A가 가공한 데이터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A가 D와 합병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요건

[폐기]



- C가 처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 경우 A와 B의 조치 사항

● 시사점

[생산]

- A가 생산한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식품 소비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 ☑ 데이터베이스는 무체물이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니므로 현행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저작물로도 보기 어려움.
 - ☑ 그러나, A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식품 소비 데이터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A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유사함.
- B가 생산한 건강 컨설팅 데이터의 소유권 또는 저작권
 - ☑ B는 A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였고, 이 역시도 소유권 또는 저작권의 대상은 아니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다만, B는 A로부터 위탁받아 데이터를 가공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A에게 양도할 수 있음.
- A와 B의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A가 수집한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식품 소비 데이터와 B가 가공한 식이요법 등 건강 컨설팅 데이터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함.

[수집·저장]

- A가 수집한 C의 식생활 관련 데이터가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



- 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A사 수집한 식품 구매정보는 결제 정보, 주소 등과 결합하여 쉽게 C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 민감정보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단순히 식품 정보와 그에 따른 식이요법 등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까지는 보기 어려우므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음.
 - A가 C의 식생활 관련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B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하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공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이때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는데, A는 민간 투자 연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를 B에게 제공할 수 있음.
 - ☑ 다만, A가 B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목적에 해당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만약 A가 C에게 최적화된 B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는 과학적 연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얻어야 함.
 - A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의 범위
 - ☑ A는 자사 서비스를 개발할 목적으로 C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것이므로 C에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하여 C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거부한다고 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음.
 - A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갖추어야 할 보안조치 수준
 - ☑ 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③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④암호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⑤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를 충족해야 함.

[가공·결합]



3장. 종합 사례

- A가 처리한 가명정보를 B가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B는 제공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해야 함. 다만, 위 가명정보와 B가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해야 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A가 B에게 개인정보의 가공·결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요건
 - ☑ A가 B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①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용해야 하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 또한 A는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B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며, 수탁자인 B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B는 A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어 A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활용]

- A가 보유한 C의 개인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 A는 C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 이용 목적,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수집·이용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A가 D와 합병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요건
 - ☑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주소, 연락처 등, ③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 특히 D는 해외 법인으로서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처리위탁·보관(통칭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폐기]

- C가 처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동의를 했다가 철회한 경우 A와 B의 조치 사항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 수집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음.
 - ☑ A와 B는 C의 동의 철회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9조의13(상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접근통제)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 종합사례 3 (문화)

☞ 주제 : 검색 데이터를 활용한 영화 기획 사례

구분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등					
부정경쟁					
영업비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기타					

[표 3-3] 종합사례 3 : 색인표

● 사실관계

- A사는 X사이트를 통해서 웹문서, 동영상 등 Y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a는 A의 자회사로 같은 X사이트를 이용하여 각종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상품의 예매, 영화 다운로드 등 Z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사는 해외 법인으로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를 기획·제작·배급하는 회사, C는 A, a, B 등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임.



- A사는 이용자들이 검색한 영화 제목, 감독, 배우, 스텝, 장르, 원작 소설·만화·드라마 등 영화에 대한 검색 데이터를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의 기준으로 가공한 데이터와 이용자들의 영화 예매 및 다운로드 데이터를 결합한 데이터상품을 기획하고 있으며, B는 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의 흥행 여부 예측, 배우 및 감독 등 스텝 섭외, 제작 규모, 출시일 등을 기획하고자 함.
- 한편, A사의 Y정보검색서비스는 국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회원의 검색 결과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자동찾기 기능으로서 이용자가 이미 검색했던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여부와 검색 날짜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정보를 이용하여 a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고 있음.

● 쟁점사항

[생산]

- A가 생산한 영화 검색 데이터의 소유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해당 여부
- A의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집·저장]

- A가 수집한 영화 검색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가 수집한 영화 구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같은 X사이트에서 제공되는 A사의 Y검색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자회사인 a의 Z전자상거래서비스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공·결합]

- A의 검색 정보와 a의 구매 정보를 가공·결합할 수 있는 요건
- A가 영화 등 정보를 검색할 때 a사의 Z전자상거래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행위가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활용]

- a가 수집한 영화 예매 및 다운로드 정보를 A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가공한 데이터를 해외법인인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폐기]

- C가 A에게 검색기록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사점

[생산]

- A가 생산한 영화 검색 데이터의 소유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해당 여부
 - ☑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데이터 자체는 무체물이면서 자연력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음. 다만, 데이터가 담겨 있는 저장매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A가 생산한 검색 데이터는 데이터로서 그 자체로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A의 검색 데이터는 창작물이 아니고 검색 정보의 집합물일 뿐이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그러나, 검색 정보의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A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됨.
- A의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A가 수집한 영화 검색 데이터는 검색서비스라는 A의 사업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



[수집·저장]

- A가 수집한 영화 검색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데, 영화 검색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나 A사의 Y검색서비스가 갖고 있는 검색결과 저장 및 제공 서비스 등은 회원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회원을 알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a가 수집한 영화 구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C가 a사의 Z전자상거래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은 회원정보, 결제정보 등과 결합되어 C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같은 X사이트에서 제공되는 A사의 Y검색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자회사인 a의 Z전자상거래서비스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각 개별 개인정보처리자마다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A와 a가 모회사-자회사 관계이고, 동일한 X사이트를 사용한다고 하여 일방의 동의를 타방의 동의로 간주할 수는 없음.

[가공·결합]

- A의 검색 정보와 a의 구매 정보를 가공·결합할 수 있는 요건
 - ☑ A와 a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제공 등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A는 C의 검색결과정보를 a에게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그 정보가 a의 Z전자상거래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 점을 명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다만, 이 사안에서는 a사의 정보를 취득하여 가공·결합하는 목적이 더욱 강함).
- A가 영화 등 정보를 검색할 때 a사의 Z전자상거래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행위가 독과점 등 불공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A사는 검색시장 점유율이 60%로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



3장. 종합 사례

위 등을 해서는 안 됨.

- ☑ A사가 이용자들의 검색결과에 자회사인 a사의 Z전자상거래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행위는 같은 전자상거래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 또한 A는 특정 회원의 기존 검색결과를 활용하여 단순한 검색결과를 넘어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추천되는 영화는 Z전자상거래서비스의 검색결과만 제공된다면 이 역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음(예: 이용자는 L이라는 영화를 검색했고, 다른 전자상거래서비스의 상품은 L만 노출시키면서, Z전자상거래서비스의 상품은 L과 함께 M, N 까지 노출시켜 구매를 유도함).

[활용]

- a가 수집한 영화 구매 정보를 A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 a사의 영화 구매 정보를 A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하며,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A가 가공한 데이터를 해외법인인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 B사는 해외법인이므로 A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가명정보를 포함한다)를 B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정보주체에게 ①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방법, ③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④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폐기]

- C가 A에게 검색기록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특정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요구에 응해야 함.
 - ☑ C는 A의 서비스에서 탈퇴하지 않고 오직 검색기록만을 특정하여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A는 그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만.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9조의13(상호주의)

▶ 종합사례 4 (금융)

☞ 주제 : 쇼핑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 상품 사례

구분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등					
부정경쟁					
영업비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기타					

[표 3-4] 종합사례 4 : 색인표

● 사실관계

- A사는 X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뉴스제공,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점유율은 7%), B사는 A가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C는 X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A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이자 B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임.
- B는 신용대출상품을 기획하면서 기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분



3장. 종합 사례

석하여 신용등급 및 금리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A사로부터 고객들의 상품 및 용역 서비스 구매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A가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회원의 정보와 통계로 작성된 정보 2가지임.

● 쟁점사항

[생산]

- A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구매정보를 이용자들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구매 상품, 용역, 금액 등으로 가공한 데이터의 소유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 해당 여부
- A가 수집한 회원들의 구매정보가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 등에 해당 여부
- B가 A로부터 통계정보를 제공받아 작성한 연령별 또는 직업별 신용등급 분류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수집·저장]

- A가 회원들의 구매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A의 X포털사이트가 해킹당했을 경우 취해야할 조치 의무

[가공·결합]

- A가 수집한 회원들의 구매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A 또는 B가 갖추어야 할 보안조치 수준

[활용]

- A가 가명처리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A가 C의 구매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A가 B에게만 회원들의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독과점 또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기]

- C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A, B의 조치 의무

● 시사점

[생산]

- A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구매정보를 이용자들의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구매 상품, 용역, 금액 등으로 가공한 데이터의 소유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 해당 여부
 - ☑ 데이터는 무체물이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아니므로 현행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저작물로도 보기 어려움.
 - ☑ 그러나, A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구매 데이터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A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짐.
- A가 수집한 회원들의 구매정보가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 등에 해당 여부
 -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①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및 이들과 결합한 ⑤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령에 정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물품 및 용역(서비스) 구매 정보는 법령이 정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에서 기업 및 법인을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①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함.
 - ☑ 특정 개인의 구매정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회원 아이디, 이메일 등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B가 A로부터 통계정보를 제공받아 작성한 연령별 또는 직업별 신용등급 분류 정보



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B가 생산한 연령별 또는 직업별 신용등급 분류 정보는 다른 은행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자료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B의 신용대출 영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

[수집·저장]

- A가 회원들의 구매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A가 수집한 회원들의 물품 및 용역 구매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A의 X포털사이트가 해킹당했을 경우 취해야할 조치 의무
 - ☑ 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X포털사이트의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회원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실을 확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침해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침해사실을 통지해야 함.
 - ☑ 나아가 A는 해킹당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하며, 단순히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회원들의 물품 및 용역 구매정보까지 해킹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그 범위도 신고·통지해야 함.

[가공·결합]

- A가 수집한 회원들의 구매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 또한 과학적 연구에는 민간 투자 연구 등이 포함되므로 A는 자체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나, 이를 B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음.



- A 또는 B가 갖추어야 할 보안조치 수준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 A 또는 B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해야 함.

[활용]

- A가 가명처리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 A는 민간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음.
 - ☑ 그러나 연구 목적이 아닌 B의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A가 C의 구매정보를 B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
 - ☑ C의 구매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인 C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A가 B에게만 회원들의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독과점 또는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②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당해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3장. 종합 사례

- ☑ A는 포털사이트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A가 B와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독과점이라 볼 수 없음.
- ☑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①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③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함.
- ☑ A와 B의 업무협력은 타인의 상품이나 상호를 혼동하게 하거나,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폐기]

- C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A의 조치 의무
 -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 C는 구매정보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A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접근통제)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전자상거래법]

제2조(정의)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1조(금지행위)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종합사례 5 (의료)

☞ 주제 : 진료 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사례

구분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소유권					
저작권					
독과점등					
부정경쟁					
영업비밀					
동의					
보안조치					
수탁자감독					
침해신고·통지					
정정·삭제					
역외이전					
아동보호					
기타					

[표 3-5] 종합사례 5 : 색인표

■ 사실관계

- A병원은 X의과대학의 부속병원, B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진료기록부, 급여청구 등의 시스템(이하 '전자의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회사, C사는 보험회사, D는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임.
- A병원과 B사는 공동출자하여 E회사를 설립하고, A병원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개별 환자들에게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과 이를 C보험회사에 제공하여



환자들의 보험료 등을 할인하는 상품 등을 기획하고 있음(C의 시장점유율은 7%).

- 또한 E회사는 A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질병, 치료기간, 진료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데이터(질병통계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임.

● 쟁점사항

[생산]

- E가 생산한 질병통계데이터의 소유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 해당 여부
- A병원 환자들의 진료정보가 생체정보,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집·저장]

- A병원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요건
- D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동의 요건

[가공·결합]

- 보험료 할인을 위하여 A병원 환자들을 C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독과점,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병원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활용]

- A병원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C사 또는 E사에 제공하기 위한 요건
- A병원이 생산한 가명정보를 E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폐기]

- A병원이 별도로 수집한 진료정보에 대해 D로부터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A의 조치의무



● 시사점

[생산]

- C의 전자의료시스템에서 생산된 질병통계데이터의 소유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 해당 여부
 - ☑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데이터 자체는 무체물이면서 자연력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음. 다만, 데이터가 담겨 있는 저장매체는 유체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 ☑ 따라서 C가 생산한 질병통계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
 - ☑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A의 검색 데이터는 창작물이 아니고 검색 정보의 집합물일 뿐이므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그러나, 검색 정보의 집합물이라 하더라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C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됨.
- A의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A가 수집한 영화 검색 데이터는 검색서비스라는 A의 사업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
- A병원 환자들의 진료정보가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보건의료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생명윤리법’, ‘인체조직법’ 등이 제정되어 있는데 위 법률들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아, 줄기세포, 유전자 연구(생명윤리법)’ 또는 ‘인간의 장기 또는 뼈, 연골, 혈관 등 신체의 일부의 이식(인체조직법)’ 등을 위한 것임.
 - ☑ A병원 환자들의 진료정보는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음.



[수집·저장]

- A병원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요건
 - ☑ 환자들의 진료정보는 환자 성명, 질병명, 증상, 증상의 경과, 진료기간(시작 및 종료), 진료비 등을 포함하고 이와 같은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진료정보를 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D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동의 요건
 -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가공·결합]

- 보험료 할인을 위하여 A병원 환자들을 C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독과점,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②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당해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함.
 - ☑ A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보기 어렵고, C사는 보험업계에서 점유율이 7%에 불과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불공정거래행위란 ①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 ☑ C사가 A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C사와 계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신규 고객 또는 기존 C사 고객에게 혜택 제공 등).
 - ☑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어 있는 행위로서 ①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③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함.

- ☑ A와 C의 업무협력은 건강관리를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상호를 혼동하게 하거나,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A병원이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됨.
 - ☑ 민감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라는 목적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C사 또는 E사에 제공시 대가 수령 등).

[활용]

- A병원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C사 또는 E사에 제공하기 위한 요건
 - ☑ A병원 환자들의 진료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①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폐기]

- A병원이 별도로 수집한 진료정보에 대해 D로부터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A의 조치의무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3장. 종합 사례

- ☑ D는 진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진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목적으로 수집된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 또한 D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인체조직법]

제3조(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제6조(접근통제)
-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정의)
-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공정거래법]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장. 종합 사례



PART

04

쟁점별 사례

Korea Data Agency

● 색인표

		①생산	②수집·저장	③가공·결합	④활용	⑤폐기
권리관계 (민사법)	㉠소유권	38, 41	38, 41	22, 38, 41	22, 38, 41	
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	14, 15, 16, 17, 19, 29, 32, 38, 39, 41	14, 15, 17, 19, 29, 32, 38, 39, 41, 42	14, 17, 19, 29, 32, 38, 39, 41, 42	19, 29, 32, 38, 39, 41, 42	
공정경쟁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독과점등	31, 48	31	31	48	
	㉣부정경쟁	14, 16, 50	14, 50	14, 50	50	
	㉤영업비밀	14, 32, 37, 50	14, 32, 37, 50	14, 32, 37, 50	32, 37, 50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등)	㉥동의	9, 37, 40, 43	1, 3, 5, 6, 7, 9, 10, 11, 18, 20, 25, 33, 37, 40, 43, 44, 49	5, 6, 18, 33, 37, 40, 43, 44, 49	5, 6, 9, 10, 11, 18, 33, 34, 40, 43, 44, 49	3, 5, 8, 36
	㉦보안조치	47	1, 4, 10, 20, 21, 22, 26, 28, 35, 47	47	10, 26	
	㉧수탁자 감독	46	2, 35, 46	46	46	46
	㉨침해신고·통지	47	35, 47	47	47	
	㉩역외이전	45	45	45	45, 49	49
	㉪정정·삭제	44	25, 44, 49	44	44, 49	8, 49
	㉫아동보호	43	12, 13, 43	43	43	12
	㉬기타	9, 39, 40, 42	5, 6, 9, 13, 20, 23, 24, 39, 40, 42	5, 6, 39, 40, 42	5, 6, 9, 24, 27, 39, 40, 42	5

제4장

쟁점별 사례



4장. 쟁점별 사례

● 사례 1 :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직원 이메일 등 무단 열람	55
● 사례 2 : 보험대리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탁자 책임	57
● 사례 3 : 고유식별정보 무단 처리	59
● 사례 4 : 해킹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61
● 사례 5 : 심리상담 사례를 출판물로 발행	64
● 사례 6 : 의약 처방전 환자 동의 없이 약국 동의만으로 수집·판매	66
● 사례 7 : 증권시세 검색앱 스마트폰 단말기 정보 수집	69
● 사례 8 : 회원 정보 삭제·폐기 요청을 받고도 무시	71
● 사례 9 : 얼굴사진 데이터상품	73
● 사례 10 : 입주자대표회장이 범죄사실 확인 목적으로 CCTV 열람	75
● 사례 11 : 혈액 검체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77
● 사례 12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79
● 사례 13 : 이동통신사업자의 아동 위치정보 파악 서비스	81
● 사례 14 : 채용정보업체의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83
● 사례 15 : 부동산 중개업체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85
● 사례 16 : 인터넷 홈페이지 미러링과 부정경쟁행위	87
● 사례 17 : 경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침해	89
● 사례 18 :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활용	91
● 사례 19 : 인터넷에 공개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집 무단 수집	93
● 사례 20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행위	95
● 사례 21 : 온라인 게임사 개인정보 유출	97
● 사례 22 : 연예인 키워드 검색광고	99
● 사례 23 : 경찰공무원이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유출	101
● 사례 24 : 접근권한과 개인정보처리자	103
● 사례 25 :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개인정보 열람권	105
● 사례 26 :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심사위원명단 등을 유출	107
● 사례 27 : 고소장에 기재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109
● 사례 28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안조치 준수 의무	111
● 사례 29 : 방송프로그램 미리보기 제공 서비스	113
● 사례 30 :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해 유료상품화	115
● 사례 31 : 소셜미디어기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18



● 사례 32 : 헤드헌팅회사 데이터베이스 유출	120
● 사례 33 : 대형마트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122
● 사례 34 : 수사기관 요청에 회원정보 제공	125
● 사례 35 : 신용카드 업무수탁사 개인정보 유출	128
● 사례 36 : 휴면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 이용	131
● 사례 37 : 도시가스 사용정보와 신용정보 결합 상품	133
● 사례 38 : 수질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136
● 사례 39 : 웹문서를 수집하여 콘텐츠로 가공	138
● 사례 40 : 사회적협동조합 승차공유정보	140
● 사례 41 : 데이터 불법 재배포 방지 방법	142
● 사례 42 : 위암환자 유전자 분석결과 데이터 활용	144
● 사례 43 : 청소년 고민글 데이터 상품화	146
● 사례 44 : 이메일 사용정보 무단 수집 후 활용	148
● 사례 45 : 해외 여행사의 내국인 개인정보 처리	151
● 사례 46 : 개인정보 처리 위탁	153
● 사례 47 : 해킹 사실 숨기다가 가중처벌	155
● 사례 48 : 포털사이트 부동산 데이터 독과점	158
● 사례 49 : 콘텐츠 제공 사업자인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합병	160
● 사례 50 : 맛집 GPS 데이터베이스	162



❖ 사례 1 :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직원 이메일 등 무단 열람

- 색인 : 수집·저장 - 동의, 보안조치
- 출처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5429 판결
- 사실관계
 - A는 B방송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C는 B방송사의 정보시스템팀장으로 근무하였음.
 - B사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C에게 지시하여 해킹차단기능이 우수한 보안제품을 설치하여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하고, X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
 - X프로그램은 해킹방지솔루션 기능 외에 부수적으로 내부 자료의 유출방지기능, 즉 사용자가 웹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USB에 저장하는 경우 그 파일을 중앙관계서버에 저장하는 ‘로깅’기능이 첨부되어 있음.
 - B사는 인트라넷을 통해 컴퓨터에 X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으나, 프로그램의 각종 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는 등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음.
 - C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분쟁을 겪게 되자, X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서버에 저장된 A의 이메일, 첨부문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음.
- 쟁점사항
 - X프로그램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 알리지 않은 채 받은 동의의 유효성
 - 관계서버에 저장된 A의 이메일, 첨부서류 등을 열람한 C의 책임
 - 공적생활에서 형성된 A의 이메일, 첨부서류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판결요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
- X프로그램 서버에 저장된 파일들은 A의 이메일, USB파일, 블로그 게시물 등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X프로그램의 로깅 기능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받은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C가 열람한 파일의 구체적 기재 내용, B가 파업 중이었던 점 및 A와 C의 신분(파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측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으며, A가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반면, C는 사측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콘텐츠실의 실장이었음)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C의 열람행위로 인하여 A에게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C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B는 C의 사용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시사점】

- ❖ 특정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위 프로그램의 설치 및 실행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에 한 동의를 받아야 함.
- ❖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범위는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것까지 모두 포함되고,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개인정보 해당 및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2 : 보험대리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탁자 책임

● 색인 : 수집·저장 - 수탁자 감독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38590 판결

● 사실관계

- A는 보험회사, B는 A보험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의 중계,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 등을 위탁하는 생명보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며, C는 B 대리점의 직원임.
- C는 A가 제공한 전산시스템 접속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D 및 D의 남편 E의 성명,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였고, 시어머니 F로 하여금 D의 집에 찾아가도록 하였음.
- C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100만원,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

● 쟁점사항

- 보험대리점 B의 직원인 C의 위법행위에 대한 A보험사의 책임 여부
- 개인정보 위탁자의 면책사유인 감독상의 주의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9조(손해배상책임)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A보험사는 개인정보처리자, B보험대리점은 A로부터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B보험대리점 직원은 A보험사의 직원으로 볼 수 있음.

- A보험사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함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함.

【시사점】

- ❖ 일반적으로 업무의 위·수탁관계에서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위탁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 위 사안은 침해된 개인정보주체가 2인에 불과한 사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았으나, 다수에 대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커질 수 있음.
- ❖ 또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있어 불법행위의 원인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나(위 사안의 경우 D와E),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화시키고 있음. 이 역시도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 ❖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근거자료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음(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 사례 3 : 고유식별정보 무단 처리

- 색인 : 수집·저장, 폐기 - 동의
- 출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1153 판결
- 사실관계
 - A는 속칭 ‘성인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A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ARS 프로그램’과 대량 문자발송사이트를 제공하고 서버 등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임.
 - 위 서비스는 도우미를 고용하여 건물 2층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밀실과 수신기 등을 마련하고, 3층 창고에는 웹서버, 컴퓨터 등 자동수신 장비를 설치한 다음 25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 하여금 도우미와 대화를 나누게 한 후 30초당 250~500원 가량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방식임.
 - A는 성인폰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한 후, 성인인증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집하여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하였음.

● 쟁점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특별한 지위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
- 수집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의 폐기 의무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과 함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령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 A는 ‘성인인증 후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으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동의라고 볼 수 없음.
- 성인인증 및 본인확인 목적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확인 즉시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저장한 것은 위법함.

【시사점】

- ❖ 고유식별정보는 그 자체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개인정보보다 특별히 보호되며, ①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②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음.
-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더욱 특별히 보호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①법률·대통령령·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기타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리할 수 없음.
- ❖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은 그 범주에 따라 처리에 대한 규정이 차등적이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일부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사례 4 : 해킹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색인 : 수집·저장 - 보안조치

- 출처 : 대법원 2017다207994 판결

- 사실관계

- A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B는 자신이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고객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A의 고객정보 1000만건 이상을 위법하게 취득·유출한 해커, C, D 등은 A의 고객으로서 해킹사건의 피해자임.
- C, D 등은 A가 ①데이터 베이스 서버 자체 또는 중개 서버에 인증절차를 두지 않았고, ②B가 A에서 퇴사한 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하였으므로 이를 말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③퇴직자의 ID로 개인정보가 조회되었음에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차단하지 못했고, ④A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거나 암호화한 개인정보의 암호화키를 소홀히 관리하였다고 주장함.
- A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관하여 ①별도 인증서버를 두는 대신 중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에는 인증절차를 두지 않은 A의 접근통제시스템이 불완전한지 여부, ②A가 퇴직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A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확인·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 ④A가 개인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음.
- 위 해킹사고의 피해자인 C, D 등은 각각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C가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부인되고, D가 진행하는 소송에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
- 대법원은 판결 당시에도 다수의 유사 사건이 하급심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

- 쟁점사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기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 판결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과 영업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안전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 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별도의 인증서버를 둔 A의 접근통제시스템 자체가 불완전하다거나, A가 개인정보 등 송·수신시 암호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A는 퇴직자의 ID를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B가 그 이전에 이미 인증서버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실을 고려하면 위 퇴직자 계정과 정보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움.
-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인증서버를 우회하는 방식의 해킹이 성공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인증서버에 저장된 접속기록을 확인·감독한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확인·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어려움.
- 따라서 C, D 등에 대한 A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4장. 쟁점별 사례

【시사점】

- ❖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해킹사건에 관해 하급심 법원들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내리던 중 대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임.
- ❖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의 경우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재차 확인한 판결임.



❏ 사례 5 : 심리상담 사례를 출판물로 발행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폐기 - 동의, 기타(민감정보, 가명처리)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판결
- 사실관계
 - A는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B회사의 설립자이고, C는 B사의 대표자임.
 - D는 B사를 방문하여 A로부터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이때 A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취한 후 그 음성파일을 B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파일 및 녹취록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였음.
 - 위 녹취록에는 A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성장기 및 유학과정의 경험담 및 사연,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현재 직종과 근무회사의 성격, 양친과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지도교수 내지 직장상사와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평가, 연애 성향, 한국 사회 및 역사와 종교에 대한 관점, 교회 생활, 모친의 거주지역, 고민거리 등 D의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됨.
 - A는 자신이 개최하는 유료 세미나의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세미나 참가자에게 위 녹취록을 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D의 성이 생략된 이름이 남아있었고, 2명의 참가자에게 보낸 녹취록은 익명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
 - D의 상담자료는 B회사의 상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의해 책자로 만들어져 시중에 판매되었음.
 - D는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여 신상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였음.
 - D는 자신의 상담내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B회사에서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세미나 자료로 배포되거나 책자로 편집되어 유통되는 사실을 알게 되자, A 등에게 그 사실을 항의하면서 해당 자료의 수거와 폐기를 요구함.
- 쟁점사항
 - A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D의 상담내용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4장. 쟁점별 사례

- D가 세미나에서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행위를 녹취록 배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가 D의 신상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가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판결요지

- 2심 법원의 판결임.
- A는 실질적으로 B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목적으로 상담내용을 수집·저장·편집·이용·제공 등 처리한 사람이고, C는 B사의 대표자이므로 모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 D의 상담내용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민감정보임.
- D가 세미나에서 대면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사상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B사에서 상담내용을 자료화하여 배포할 것까지 예상하거나 이를동 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A 등은 유료 세미나 과정 등에서 수익을 얻기 위하여 D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연구 및 교육목적으로 보기 어려움.

【시사점】

- ❖ 개인의 사상, 신념, 정치·종교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서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하여 별도의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민감정보 침해는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욱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 AI의 발전에 따라 상담사례와 같은 문언을 분석하여 통계화시키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으나 그 결과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가명처리, 보안조치 등을 준수해야 함.
- ❖ 상업적 목적과 연구·교육 목적은 구분되며, 일부 연구·교육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영리추구라면 동의 요건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례 6 : 의약 처방전 환자 동의 없이 약국 동의만으로 수집·판매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동의, 기타(민감정보)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4963
- 사실관계
 - A는 약사의 지위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의약품 등의 생산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약국경영관리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B는 의약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약품정보 관련 연구 용역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C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D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내 자회사로서 의약 및 건강 관련 사업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수집,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D는 환자로서 처방전에 관한 정보가 B, C에 의해 수집된 사람임.
 - A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약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자관리 및 조제데이터를 입력·저장하는 등의 기능을 갖춘 심사청구 프로그램인 D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B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함.
 - B는 위 프로그램에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관련 정보를 B에게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포함시키면서 조제정보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팝업 방식으로 공지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였음.
 - B는 C와 D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약국으로부터 취합된 재고관리 및 처방조제 데이터를 공급하고, 그 데이터를 상용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데이터 범위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성별 및 생년 월일, 처방전 발급기관,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 분량 및 용법, 처방전 발급 연월일 등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임.
 - C는 위 정보를 미국에 있는 본사에 보내고 정보분석 및 통계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다시 전송받아 제약회사에 판매하였음.
- 쟁점사항



4장. 쟁점별 사례

- B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
- B가 약국으로부터 받은 환자관리 및 조제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가 적법한지 여부(개인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 B가 C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행위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 D의 피해가 인정되는지 여부(A, B, C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관련법령

[구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정의)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39조(손해배상책임)
-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판결요지

- 2심 법원의 판결임.
- B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동의를 얻어 환자관리 및 조제데이터를 수집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환자관리 및 조제데이터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주체는 약사가 아니라 환자이고, 환자



로부터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B가 약사로부터 얻은 동의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부적법함.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당 개인정보가 적법한 동의를 얻어 수집되었음을 전제하므로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부적법한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의 경우 환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은 위법하나 통계 작성 등에 사용된 점,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D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시사점】

- ❖ 정보주체와 데이터베이스권리자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를 경우가 많음. 따라서 사안별로 동意的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이 사건은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개인정보보호법령 개정 취지상 정보주체의 동의권 자체가 중요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동의권 자체에 대한 침해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사례 7 : 증권시세 검색앱 스마트폰 단말기 정보 수집

- 색인 : 수집·저장 - 동의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343 판결

- 사실관계

-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는 A사의 부사장 겸 인터넷본부장으로서 스마트폰용 증권시세 검색 어플리케이션인 X앱을 개발·배포한 책임자, C는 A로부터 앱 개발을 수주하여 납품한 사람임.
- X앱은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부터 'imei(국제모바일단말기 인증번호)와 usim 일련번호의 조합' 정보를 읽어오거나 휴대폰 종류 내지 운영체제에 따라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일련번호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imei와 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의 조합'정보를 읽어와 A사 서버에 저장한 다음 사용자가 다시 접속하는 경우 위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비교하여 사용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별도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자가 등록해 놓은 관심종목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음.
- B와C는 위 앱을 통해 imei와 usim 일련번호 조합 정보 82,413건, imei와 휴대전화번호 조합 정보 1,003건 등을 수집함.

- 쟁점사항

- imei, usim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인터넷 전송정보파일인지 여부
- 앱을 설치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라 받은 동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정의)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imei는 각 휴대폰에 부여된 기기 고유번호, usim 일련번호는 사용자 개인식별 정보 등이 들어 있는 usim 카드의 일련번호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권한 있는 자가 정보를 조합하여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단순한 인터넷 접속정보파일이 아님).
-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안내는 ‘이 응용프로그램은 다음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통신, 전화통화’ 등의 내용일 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imei나 usim 일련 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앱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시사점】

- ❖ 이용자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령은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행위로 평가됨.
- ❖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imei, usim, 휴대전화번호 등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사례 8 : 회원 정보 삭제·폐기 요청을 받고도 무시

- 색인 : 폐기 - 동의, 정정·삭제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381 판결
- 사실관계
 - A는 인터넷 경품응모 대행 업체인 W사의 대표이사, B는 영화정보 제공 및 영화예매 대행 업체인 Y사의 대표이사이고, W사와 Y사는 각각 관련 웹사이트인 X, Z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C는 X사이트 회원으로서 자신의 동의 없이 Z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임.
 - A와B는 공모하여 W사가 운영하는 X사이트 회원 6,203,835명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Y사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Z사이트 회원으로 임의로 가입시킴.
 - C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Z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된 후 Y사에 회원 가입 해지 및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하였음.
 - Y사는 C 외에도 370명으로부터 회원가입 해지 및 개인정보 삭제요구를 받았음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쟁점사항
 - Y가 회원가입 해지 및 개인정보 파기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73조(벌칙)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A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B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개인정보 파기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유죄 판결을 받음.

【시사점】

- ❖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의무는 개인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슈화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간과하기 쉬우나, 다른 의무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례 9 : 얼굴사진 데이터상품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활용 - 동의, 기타(생체정보)
- 출처 : 데이터스토어 상담사례
- 사실관계
 - A회사는 이용자들의 사진을 수집하여 얼굴사진 데이터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 쟁점사항

- 얼굴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얼굴사진이 생체정보로서 처리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수집, 제공시 동의 방법
- 동일 사진을 반복해서 다수에게 판매할 경우 동의의 방법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상담요지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됨. 따라서 얼굴사진은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 연구,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에 관한 법률이고,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의미하므로 얼굴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은 생명윤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것이므로 데이터셋 구축에 관한 승인과는 무관함.
-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항목 등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일인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최초 동의시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기간, 횟수 등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시사점】

- ❖ 생명윤리법은 배아줄기세포 논란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배아나 유전자, 인체에서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음.
- ❖ 인간의 신체에 대한 정보라고해서 모두 생체정보는 아니며, 생체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생명윤리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항목을 구분하여 명확히 인지시켜야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 외의 구체적 내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사례 10 : 입주자대표회장이 범죄사실 확인 목적으로 CCTV 열람

- 색인 : 수집·저장, 활용 - 동의, 보안조치
-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67 효력정지가처분결정
- 사실관계
 - A는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 중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열람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음.
 - A는 문서손괴 등 범죄행위가 의심되었기에 이를 확인할 목적이었고, 아파트 관리규약 상의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열람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임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
- 쟁점사항
 - 범죄 확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CCTV 영상 자료를 제공·열람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정보주체 동의 필요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업무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때 범죄 수사는 국가기관의 작용으로서 수사를 의미하고,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범죄 사실을 확인할 목적’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아파트 관리규약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대체할 수도 없으며,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따라서 A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써 해임은 정당함.

【시사점】

- ❖ 아파트 관리규약은 사적자치규약일 뿐이므로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됨.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이 이를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함.
- ❖ 마찬가지로 회사의 내규 등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였다고 해서 적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
- ❖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의 확인 의무가 면제되나 이는 엄격히 해석될 것이므로 동의를 받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에 예외 규정을 주장할 수 있음.



❖ 사례 11 : 혈액 검체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색인 : 수집·저장, 활용 - 동의

●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노7275 판결(확정)

● 사실관계

- A는 X대학교 의과대학 Y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으로서 진단검사의학과 산하 외래채혈실, 혈액은행파트, 분자생물파트 등 10개 파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각종 질병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위 분자생물파트 파트장으로서 주로 인플루엔자(influenza), RS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의 진단검사를 위해 채혈된 혈액 검체를 검사·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C는 A의 고교 후배로서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Z사의 창업자임.
- 진단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스티커에는 ‘환자이름, 등록번호, 성별/나이, 병동,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등’ 개인정보가 인쇄되어 있으며, 그 정보가 바코드화 되어 있는데, 진단검사의학과에 컴퓨터에 설치된 W검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에 위 검체번호를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곧바로 위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수치’ 정보도 쉽게 알 수 있으며, A와 B는 W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위와 같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저장, 검색, 출력, 이용하는 등 이를 처리하고 있었음.
- A는 Z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취득한 후 Z사 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Y병원 환자들의 혈액 검체 정보를 유출하기로 하고, B와 공모하여 위 라벨스티커 중에 ‘환자이름, 성별/나이, 병동 등은 지우고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검사결과수치, 바코드’부분만 남긴 채 Z사에 약 4,000여 개의 검체용기를 제공하였음.

● 쟁점사항

- 성명, 성별/나이 등을 삭제한 혈액 검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판결요지

- 2심에서 확정된 판결임.
- ‘검체번호, 채혈시간, 검사항목, 검사결과 수치, 바코드’ 부분 자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데 위 검체정보를 통해 특정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W프로그램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A, B가 접근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검체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들이 혈액 검체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무조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 Z에게는 진단시약 개발을 위한 혈액검체의 검사항목과 검사결과 수치가 중요했을 뿐 해당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A, B에게 환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W프로그램에 접속한 사실도 없음.
- 따라서 A, B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음.

【시사점】

- ❖ 위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결로서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었고, 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음.
- ❖ -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명처리한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 - 따라서 이 사례의 혈액검체정보 역시 가명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용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위법할 수 있음.
- ❖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활용의 길을 넓힌 반면, 그 요건도 엄격하게 강화하였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 12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 색인 : 수집·저장, 파기 - 아동보호
- 출처 : 2005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사실관계
 - A는 초등학생 대상 X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B는 초등학생 자녀C를 둔 부모
 - B는 C가 보습학원에 등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으로부터 홍보 우편물을 받았음
 - 위 우편물에는 B의 주소, C의 성명, 학교명, 학년 및 반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
- 쟁점사항
 - X학원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인지 여부
 - B, C와 X 사이에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 조정요지
 - X학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함.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B, C는 X학원의 이용자가 아니



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위원회 결정) 그러나, B로서는 C의 정보가 수집된 과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A는 B에게 위자료 30만원 지급.
- (교육청 처분) A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파기, 향후 홍보물 발송 금지.

【시사점】

- ❖ 학원은 원생과의 관계에서는 ‘이용자’관계가 성립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규정 적용됨.
- ❖ 만 14세 아동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 ❖ 위 사례에서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아닌 홍보활동에 직접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위법행위에 해당함.



❏ 사례 13 : 이동통신사업자의 아동 위치정보 파악 서비스

- 색인 : 수집·저장 - 아동보호, 기타(위치정보)
- 출처 : 2005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사실관계
 - A기업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아동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파악기능을 이용하여 부모가 자녀의 현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 서비스의 가입주체는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정하는 자임
 - 위 서비스의 연령 기준은 만 7세로 설정하였고, 서비스 가입시 해당 아동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아동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전화통화를 통해 동의를 득한 후 법정대리인의 대리서명을 받도록 함
- 쟁점사항
 - 아동의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동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친권의 범위와 한계
 - 법정대리인 이외 법정대리인이 정하는 자도 아동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31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민법]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4조(거소지정권)

제915조(징계권)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조정요지

- 아동의 '위치정보'는 이동통신 가입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함
- 민법상 친권은 자녀를 보호·양육할 의무를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자녀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충분한 지각능력을 가진 아동의 활동상황과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친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지배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보호자의 전적인 보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만 7세 전후 아동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 없이 위치추적이 가능함
- 법정대리인 외에 법정대리인이 정하는 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제3자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정하는 자에게도 아동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시사점】

-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권을 주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법정대리인의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은 친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와는 별도의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음.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상품을 기획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되, 그 상품의 내용이 개별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로, 2005. 7. 28.부터 시행된 위치정보법은 8세 이하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요건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음.



❏ 사례 14 : 채용정보업체의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결합·가공 -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 출처 : 대법원 2017다224395 판결
- 사실관계
 - A는 온라인 리크루팅 서비스, 인터넷 기반기술을 이용한 채용대행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직업소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B는 구인, 구직,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B는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는 ‘크롤링방식’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제작함.
 - B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A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369건의 채용정보를 A 동의 없이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하였음.
- 쟁점사항
 - A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의 채용정보를 B가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판결요지

- A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제작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 또는 물적 투자를 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 A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는 A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수집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리한 HTML소스를 복제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시사점】

- ❖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데이터셋은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정될 여지가 많음(다만, 수집된 데이터의 원본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개 문제).
- ❖ 데이터베이스가 영업을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례 15 : 부동산 중개업체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 저작권
-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110
- 사실관계
 - A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보조중개인으로서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부동산의 내부구조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광고하여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B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 이들 홈페이지는 대구와 경산 지역 원룸을 지역, 종류, 가격, 면적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특정 매물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와 사진을 볼 수 있음.
 - B는 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와 사진 8000여 장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 쟁점사항
 -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A가 게재한 정보 및 사진이 저작권법상 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의 결정 방법
- 관련법령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부동산 설명용 사진은 최소한도의 창작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볼 수 없음.
- 지역, 종류, 가격, 면적 등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 중개 정보 홈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 B의 손해액은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적절히 산정되지 않아 법원이 홈페이지 제작기간, 사진 수량, 동종업계에서 관행상 인정되는 사용료,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산정.

【시사점】

- ❖ 부동산을 비롯한 제품 설명용 사진은 저작물은 아니나, 부동산 중개 정보 홈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할 수 있음.
- ❖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손해액이 적절히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따라서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사진 등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어떤 사이트든 축적된 데이터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 참고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면책 요건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 사례 16 : 인터넷 홈페이지 미러링과 부정경쟁행위

- 색인 : 생산 - 저작권, 부정경쟁
- 출처 : 대법원 2017다204315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198 판결)
- 사실관계
 - A는 ‘X위키’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이고, B는 다수 도메인을 사용하여 미러링(특정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를 전부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 방식으로 X위키 사이트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X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이며, 대형포털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하고 있음.
 - ‘X위키’는 이용자들이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 수정 및 편집, 삭제 등을 할 수 있음
- 쟁점사항
 - A가 X위키 사이트의 편집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판결요지

- 심리불속행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됨.
- A가 X위키 사이트의 각 주제별 목차를 정하고, 프론트 페이지를 작성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자유롭게 작성, 수정 및 편집, 삭제 등을 해왔다는 점에서 편집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인정되지 않음.
- B의 행위는 ‘X위키’라는 명칭에 ‘미러’라는 단어만 추가한 것으로서 ‘X위키’ 사이트와 유사하여 사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시사점】

- ❖ 이른바 ‘위키’사이트의 게시물도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을 수는 있음, 그러나 그 사이트의 운영 특성상 다수의 이용자가 작성한 저작물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 개인에게 그 저작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귀속시킬 수 없음.
- ❖ 이 사건에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위키의 게시물은 다수 이용자가 조금씩 작성·수정한 결과물로서 공동저작물이라 볼 수 있고,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을 데이터로서 수집할 경우에는 먼저 공동권리자를 확정된 후 개별적으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사례 17 : 경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침해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 저작권

●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4306 판결

● 사실관계

- A와 B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이 수집한 부동산 현황, 매각 금액, 낙찰인 정보, 경매 결과 등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A와 B는 전국 각 경매법원에서 경매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원들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정보를 제공받거나 다른 경매정보제공업체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받는 방식으로 경매정보를 구축하였음.
- A는 타 업체가 자신이 수집한 경매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자 이를 적발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100건의 거짓 경매정보를 입력하였는데 B는 그 중 57건을 동일하게 게시하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사항

- A가 수집한 정보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 B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A의 경매정보는 전국 법원별, 부동산 현황, 경매매수인, 매각 금액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A는 상당한 인적 또는 물적 투자를 하였



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

- B는 A의 경매정보를 반복적으로 무단 복제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므로 A의 권리를 침해함.
- 그러나 B가 조사원 또는 타경매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단순히 게시해왔던 방식을 볼 때 A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B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시사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 채용정보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매정보 역시 법원에서 공개하는 정보이고, 경매정보제공 서비스란 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일 뿐이나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 따라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재가공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시사점】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 ❖ 채용정보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매정보 역시 법원에서 공개하는 정보이고, 경매정보제공 서비스란 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것일 뿐이나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 ❖ 따라서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재가공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사례 18 :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활용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동의

● 출처 :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

● 사실관계

- A는 Z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는 X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B는 종합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Y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 B는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Y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하였음.
- 이 Y사이트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중 출생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X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고, 출생연도는 A가 이전에 근무했던 Z대학교 교원명부와 X대학교 교수요람에 이미 게재되어 있었음.

● 쟁점사항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판결요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



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함.
- 대학교수인 A의 학력, 경력에 관한 정보는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수험생 및 그 학부모들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시사점】

-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므로 공개 당시 동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 ❖ 대학교수, 선출직 공무원 등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는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음. 다만, 공인이라고 해서 모든 개인정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의 개인정보에 한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은 허용되기 어려움).
- ❖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데이터상품을 기획할 경우 정보주체가 공인인지 여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수집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사례 19 : 인터넷에 공개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해설집 무단 수집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저작권
-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7가단70153 판결
- 사실관계
 - A는 B와 함께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만들고 같은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문제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C학원은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출판하는 법인사업자이며, D는 C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임.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상 유례 없이 고난이도로 출제되었던 바, D는 A와B가 해당 시험의 기출문제 해설집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한 사실을 알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C학원에서 발행하는 기본교재, 실전예상문제집 등 교재로 만들어 배포하고, 피디에프 파일로 제작하여 C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원생에게 제공하였음.
- 쟁점사항
 - 국가기관이 출제한 기출문제를 해설한 해설서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의 한계

● 관련법령

[저작권법]

- 제2조(정의)
- 제5조(2차적저작물)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국가기관이 출제한 기출문제 해설집도 저작물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임.
- 다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시사점

- 원본 자료는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저작자의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여 가공한 경우 저작물에 해당함.
-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원저작물을 일부 가공하여 2차저작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고,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시사점】

- ❖ 원본 자료는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저작자의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여 가공한 경우 저작물에 해당함.
- ❖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원저작물을 일부 가공하여 2차저작물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음.
- ❖ 따라서 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하고,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 사례 20 :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행위

● 색인 : 수집·저장 - 동의, 보안조치, 기타(위치정보, 손해배상)

● 출처 : 대법원 2015다251539 판결

● 사실관계

- A는 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B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마케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인 C의 자회사로서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A가 제작한 기기들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며, D는 A가 제조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임.
- 위 단말기에서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off)’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B의 서버에 전송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사실을 인정하여 B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암호화 기술 적용,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부과함.
- D는 단말기 제조사 A와 위치정보사업자 B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쟁점사항

- 기지국을 통해 대략적으로 측정될 뿐인 휴대전화 단말기 위치가 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치서비스기능을 끈 상태에서 이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불법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와 B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 관련법령

[위치정보법]

제2조(정의)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판결요지

- 이 사건 정보수집방식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기반서비스 기능이 '켄' 상태에 있을 때 사용자가 위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플을 구동시키면, 익명으로 기기 주변의 기지국과 Wi-Fi AP에 대한 고유정보를 GPS 좌표와 함께 하나로 묶어 부호화한 다음 B의 서버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B가 수집하는 위 정보는 기기 주변의 기지국과 Wi-Fi AP에 대한 고유정보 등을 통하여 이동성 있는 물건인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략적인 위치 산정이 가능하므로 위치정보에 해당함.
- 위치서비스기능을 끈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수집에 해당함.
-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가 수집되었고,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 일부 단말기에서 발생하였던 점, 과거 위치정보일 뿐이어서 유출되어도 정보주체의 법익침해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됨

【시사점】

- ❖ 이 사례는 불법성은 인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은 부인된 사례이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기 이전 판례이기 때문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 기지국을 통해 대략적으로 측정되는 위치도 위치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개인위치정보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치정보 해당 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21 : 온라인 게임사 개인정보 유출

- 색인 : 수집·저장 - 보안조치
- 출처 : 대법원 2007다17888판결
- 사실관계
 - A사는 온라인 게임 X를 개발하여 그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B는 위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임.
 - A사는 위 온라인 게임 서버 및 네트워크 정기 점검 작업을 실시하면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과 관련된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키보드로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로그파일로 기록되도록 하였음.
 - 기능 점검 후 이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삭제했어야 함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방치되었고, 이에 2시간여 동안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되어 유출되었고, A사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도록 강제변경 조치를 취했음.
 - 당시 이용자들의 접속 통로는 PC방 또는 개인 컴퓨터였음
- 쟁점사항
 -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로그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하는 행위가 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32조 (손해배상)
- 판결요지
 -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에 해당함

- 정보통신망법상 ‘누출’이라 함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개인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PC방 컴퓨터의 경우에는 누출에 해당하지만, 개인 컴퓨터의 경우에는 누출에 해당하지 않음

● 시사점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경우 기술적 차이점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유출’이라는 개념 자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법성, 손해배상액 등을 판단하게 됨.
- 따라서 보안조치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응조치를 즉시 취하고, 유출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시사점】

- ❖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경우 기술적 차이점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유출’이라는 개념 자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위법성, 손해배상액 등을 판단하게 됨.
- ❖ 따라서 보안조치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응조치를 즉시 취하고, 유출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사례 22 : 연예인 키워드 검색광고

- 색인 : 활용, 가공·결합 - 소유권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 판결
- 사실관계
 - A는 X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B로부터 분할된 회사로서 온라인 광고영업, 마케팅 플랫폼, IT 인프라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는 A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광고주이며, D는 연예인으로서 위 키워드 검색광고로 인하여 성명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임.
 - A는 X사이트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A와 광고계약을 맺은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를 다른 검색결과보다 상단에 게시하는 ‘파워링크’, ‘비즈사이트’ 등의 서비스와 이용자들이 D등 연예인 이름과 상품을 결합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고주 웹페이지를 검색결과로 나타내는 서비스 등을 제공함.
 - C는 연예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연예인이 사용한 제품에 대한 키워드광고계약만 체결하였고, 이에 연예인 D는 위 키워드 검색광고가 자신의 성명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사항
 - 키워드검색광고의 법적 성질
 -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 침해 여부
 -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관련법령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23조 재산권



[저작권법]

제2조(정의)

● 판결요지

- 2심 법원의 판결임.
- 키워드검색광고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검색·수집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그 단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알려주는 검색결과를 이용자의 화면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광고주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광고계약임(연예인 서명이 포함된 키워드의 매매라고 볼 수 없음).
-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음.
-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인정되나 침해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연예인의 이름은 제품을 식별하는 일종의 공적 지표로서 활용되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검색도가 높으면 도움이 될 뿐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명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움.

【시사점】

-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서 창작행위가 아닌 태생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는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연예인의 성명은 개인정보에는 해당하나 저작물로 볼 수는 없음.
- ❖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연예인들은 인격권 및 그 재산적 가치를 주장하였으나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현행 법률상 인격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근거는 없음.
- ❖ 연예인 성명을 재산상 권리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에게 성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아직까지 법원은 연예인 성명을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만 파악함.



❖ 사례 23 : 경찰공무원이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유출

- 색인 : 수집·저장 - 보안조치(유출), 기타(개인정보)
- 출처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
- 사실관계
 - A는 경찰공무원이고, B는 도박 현장을 단속당한 도박죄 혐의자, C는 도박 범죄 현장을 제보한 신고자임
 - A는 C의 신고를 받고 도박현장을 단속한 뒤 판돈 규모 등이 작다는 이유로 혐의자들을 훈방조치하였음
 - 이후 B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A를 만나 당시 도박 현장을 제보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A는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신고자 전화번호를 암기한 뒤 B에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 알려주었음

● 쟁점사항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이용자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숫자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뒷자리 4자만으로 이용자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정체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 설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그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시사점】

- ❖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이용자의 정체성이 담긴 정보라고 보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하였음.
- ❖ 이용자의 정체성이 담길 수 있는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될 수 있고, 개인정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음.
- ❖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소한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24 : 접근권한과 개인정보처리자

- 색인 : 수집·저장, 활용 - 기타(개인정보처리자)

- 출처 : 대법원 2019도3215

● 사실관계

- A는 B방송국에서 제작하는 X프로그램의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재직 중이고, B는 X프로그램이 실시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청취자임
- 위 경품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 및 연락처를 방송국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A는 청취자인 B가 위 경품행사의 시상 내역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X프로그램 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항의글을 게시하자, 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B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주었음

● 쟁점사항

- 프리랜서 방송국 작가인 A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71조(벌칙)

● 판결요지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해야 하는데,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람은 담당피디 등 운영팀일 뿐이고, 프리랜서 방송작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록 방송작가가 운영팀에 요청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음(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A의 무죄를 확정).

【시사점】

-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님.
- ❖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됨.
-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평소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음.



❖ 사례 25 :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개인정보 열람권

- 색인 : 수집·저장 - 동의, 정정·삭제(열람)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8116 판결
- 사실관계
 - A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검색,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B는 A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임.
 - A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위 서비스의 준거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이며, 분쟁시 전속 관할 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X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법원임.
 - B는 A가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A는 준거법령 위반, 전속 관할 위반이라 주장하였음.
 - A는 B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자국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는 이유로 열람요구를 거부함.
- 쟁점사항
 -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이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수 있는지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무조건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국제사법]
제27조(소비자계약)
 -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우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는 강행규정이므로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하더라도 공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비공개의무가 부과된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명령

【시사점】

- ❖ 외국 법인과외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법인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행사 가능함. 다만, 외국 법인이 자국 법령상 제한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 사례 26 : 소송 중인 당사자에게 심사위원명단 등을 유출

- 색인 : 수집·저장, 활용 - 보안조치
-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256 판결
- 사실관계
 - A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항공기상장비 등 규격평가를 위한 기상기자재 도입심의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위원들의 명단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B는 위 항공기상장비를 납품하는 조달업자임.
 - B는 2회에 걸친 평가심의에서 경쟁업체와 동일한 점수를 받았고, 결국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자 낙찰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경쟁업체가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
 - A는 B의 소송을 도울 목적으로 ① 자신이 직접 참여한 1차 규격평가 심의위원회 평가위원 명단과 ②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2차 규격평가 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 집계표 등을 담당 직원으로부터 입수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위 서류에는 평가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음.
- 쟁점사항
 - A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는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 판결요지
 - 1심 법원의 판결임.



- A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규격평가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함.
- 또한 A는 업무목적으로 평가위원 개인정보파일인 심의위원 명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시사점】

-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당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도 적용됨.
- ❖ 소송에 제출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 사례 27 : 고소장에 기재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 색인 : 활용 - 기타(보충성)

● 출처 : 대법원 2014도7598 판결

● 사실관계

- A는 X대학 교수로서 레크리에이션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B는 같은 대학 학생으로서 레크리에이션학과 학생회장임
- A는 학과장으로서 학생회장 B를 비롯한 학생회 간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B가 학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B를 고소하였음
- A는 고소장에 B를 적시함과 동시에 B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음

● 쟁점사항

-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도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인지 여부
- A가 고소장에 개인정보를 적시한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59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 판결요지

- A가 B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고소인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할 것임.



- 그러나 B는 학교에 게시한 대자보에 '레크리에이션 학과 학생회장'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B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X대학 레크리에이션학과 학생회장이면 충분함. 결국 A의 행위는 B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것임.

【시사점】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외의 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충성(해당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
- ❖ 고소, 고발 등 자신의 권리행사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보충성, 정당성, 상당성 등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함.



❖ 사례 28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안조치 준수 의무

● 색인 : 수집·저장 - 보안조치

● 출처 : 대법원 2017다207994판결

● 사실관계

- A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고, B 등은 A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C는 텔레마케팅 사업자이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A의 고객정보를 해킹한 사람임.
- A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서비스 이용 내역, 요금 부과 내역 등 고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X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함.
- C는 텔레마케팅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X포털에서 A의 고객정보 870여만건을 무단으로 수집하였고, 위 해킹프로그램을 다수의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A의 고객정보를 무단 수집하도록 도와주었음.

● 쟁점사항

- A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요건

● 관련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32조(손해배상)

● 판결요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기술적 안전조치는 법령상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 A는 개인정보취급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고, X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저장 및 전송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암호화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암호화키를 소홀히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에 관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함.
-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입증해야 함.

【시사점】

- ❖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기준은 법령에 따르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경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적용됨.
- ❖ 청구인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일반 손해배상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보안조치에 관하여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그 근거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사례 29 : 방송프로그램 미리보기 제공 서비스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저작권
- 출처 : Docket Nos. 15-3885(L), 15-3886(XAP)
- 사실관계
 - A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 B는 TV 방송프로그램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이용자에게 텍스트 형식으로 검색한 방송프로그램을 10분까지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 A는 B가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고, B는 자사 서비스는 검색서비스로서 변형된 형태이며, 뉴스 프로그램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 쟁점사항

- 공개되는 저작물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검색 및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미국 저작권법(Copyright Act of 1976)]

§107.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판결요지

- B의 서비스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원본과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인 A의 라이선스 수익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시사점】**

- ❖ B는 원본 방송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편성표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하는 기존 서비스와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나, 방송 콘텐츠 자체는 10분으로 시간을 줄인 것 외에는 아무런 편집도 거치지 않아 원본과 동일한 것이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됨.
- ❖ 동영상 검색 및 제공 서비스의 경우 해당 동영상 자체의 저작권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는 데이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제공 서비스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30 :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해 유료상품화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활용 - 소유권, 저작권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나96306 판결(확정)
- 사실관계
 - A는 시중물가 전문조사기관으로서 월간 ‘X물가정보지’를 출판하는 사단법인이고, B는 건설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Y ‘EMS(Estimate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서 건설공사 원가계산 및 견적산출 프로그램을 의미함)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임.
 - X물가정보지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 등에 응하기 위해 공사내역을 작성할 때에 공사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조사된 각종 물품에 대한 물가정보 자료인데, 유사한 가격정보가 원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기는 하지만, 공사내역서에 물가정보의 정확한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물가정보지의 발행 호수와 쪽수를 기입해야 하므로, 해당 물가정보지를 구입해야 함.
 - A는 1989년 설립 이래 매달 조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 공급업체를 방문·설문하는 방법으로 상품명칭, 규격, 단위, 가격 순서로 조사하게 해왔고,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공통자재, 토목자재, 건축자재, 급배수건축설비, 기계공구환경, 전기자재, 정보통신기자재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여러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매달 19만 5,000개에서 20여 만 개의 개별 가격정보를 담아서 X물가정보지를 발행함.
 - Y프로그램은 1992년 개발된 이래 공사원가를 산출해 예산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설 관련 물가정보 산출 프로그램으로, B는 그 구성요소의 하나인 설계예산내역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재비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A와 같은 물가정보지 발행업체가 발행·배포한 가격정보지로부터 물가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Y프로그램의 데이터 항목으로 구성해 왔음.
 - B는 X물가정보지에서 분기별로 7,361개 상당의 물가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Y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로 만든 다음 가격을 비교·사용하는 자료로 유료회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B는 위 데이터파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권리가 B에게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였음.

● 쟁점사항

- 출판물인 X물가정보지가 데이터베이스에, A가 데이터베이스권리자에 각각 해당하는지 여부
- X물가정보지에 수록된 가격정보는 모두 공표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로써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인지 여부
- B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판결요지

- X물가정보지는 19만 5,000개에서 20여 만 개 물품의 시중단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수록함으로써 이용자가 X물가정보지로부터 개별 소재인 가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X물가정보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
- A는 매달 조사대상인 물품을 선정한 후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 공급업체를 방문·설문하는 등으로 가격정보자료를 모아 왔고,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함으로써 X물가정보지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함.
- X물가정보지에 담긴 가격정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사되어 공표되는 자료도 아닌 이상, 이를 두고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음.
- B는 A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순위가 1위 ~ 100위 사이에 이르는 가격정보로서 X물가



4장. 쟁점별 사례

정보지에서 질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정보를 분기별로 7,361개 상당 추출하여 Y프로그램에 연동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로 만들어 이를 B의 유료회원들에게 배포하였으므로, B는 A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

【시사점】

- ❖ 이 사건은 월간지 형태의 출판물(현재도 출판물로 발행되고 있으며, 1700페이지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임)을 데이터베이스로 인정한 2009년 판례로서, 현재와 비교해보면 A사 직원들은 데이터마닝 컴퓨터, 각 물품의 물가정보는 빅데이터, X물가정보지는 데이터상품으로 바뀌볼 수 있음.
- ❖ 공개된 정보(=소재)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배열, 구성한 편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되며 그 제작자에게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저작권과는 별개이며, 창작여부가 핵심인 저작권과는 달리 수집 및 가공 여부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권리로서 빅데이터 산업에서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음(데이터마닝에 대한 저작권 면책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음).



❖ 사례 31 : 소셜미디어기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 독과점등, 부정경쟁

■ 출처 : kvr 69/19 (ecli : de : bgh : 2020 : 230620bkvr69.19.0)

■ 사실관계

- A사는 온라인 상으로 친구, 가족 등 지인들과 소식,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인 X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창업 이래 다양한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오고 있으며, 현재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하는 Y앱과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Z앱 등을 보유하고 있음.
- A사의 X앱은 독일 전체 사회관계망서비스 시장에서 일일 활성 사용자 사이에서는 95% 이상, 월간 활성 사용자 사이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쟁점사항

- 데이터를 매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 관련법령

[독일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 19 Verbotenes Verhalten von marktbeherrschenden Unternehmen(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판결요지

- A사는 이용자 동의 없이 거의 무제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체 데이터 및 타사 웹 사이트 분석을 결합하여 이용자에 대한 매우 정확한 프로필과 사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데이터 독점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타사 서비스로 이동하지 못



4장. 쟁점별 사례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음.

【시사점】

- ❖ 데이터를 주요 재화로 하는 시장도 인정되며,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
- ❖ 데이터 독점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독과점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 다만, 이 사례는 독일 판례로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음.



❖ 사례 32 : 헤드헌팅회사 데이터베이스 유출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저작권, 영업비밀
-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0노1053 판결(확정)
- 사실관계
 - A는 부산, 경남, 경북 등 지역의 간부급 인재에 대한 개인 이력 및 신상정보 등 인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전문인력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B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C는 B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위 인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유출하였음.
 - 이 유출된 자료는 업무분야별로 구분된 수백 명 분량의 구직자 이력서 등 A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A는 인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노트북에 담아 관리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회사 영업비밀 관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받아왔고, C가 퇴직할 때에도 같은 취지의 서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음.
 - C는 퇴사 후 2개월여 만에 동종 업체에 취직하여 위 인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
- 쟁점사항
 - 헤드헌팅 회사의 인재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8조(벌칙)
- 판결요지
 - C가 취득, 사용한 인재 정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4장. 쟁점별 사례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함.

【시사점】

- ❖ 영업비밀 해당여부는 ①비공개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법원은 헤드헌팅 회사의 특성상 인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함.
- ❖ 영업비밀이 쟁점이 될 경우 해당 업계의 관행, 사업의 특성,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 고려될 것임.
- ❖ 따라서 데이터 수집 시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데이터가 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33 : 대형마트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동의

● 출처 : 대법원 2016도13263 판결

● 사실관계

- A법인은 물류·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국적으로 139개의 대형마트, 286개의 직영점, 8개의 물류유통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B와 C법인은 생명보험 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가입과 관련한 회원정보 및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한 대상자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는 등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
- A는 수집한 회원정보 및 경품행사 응모고객 정보를 보험모집을 원하는 여러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2002년경 일반상품부분 산하에 신유통서비스본부를 설치하고, 신유통서비스본부 내의 보험서비스팀으로 하여금 수집한 회원정보 및 경품행사 응모고객 정보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한편, 패밀리카드 가입, 경품이벤트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응모고객 정보를 수집함.
- A는 B, C등과 위와 같이 경품이벤트 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한다는 업무제휴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경품행사를 기획·시행하면서 경품행사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1mm 크기 글씨로 기재하여 사실상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였음.
- A는 보험마케팅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작업(보험계약 위약 경력자 등을 걸러내는 작업)을 위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패밀리카드 회원의 정보까지도 B, C 등에게 미리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B, C사의 직원들이 A사 웹하드에 접속하여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음.

● 쟁점사항

- A가 1mm 크기 글씨로 동의를 받은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가 패밀리카드 회원 정보를 B, C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보험마케팅에 필요한 대상



자를 선별하는 업무를 위탁한 것인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여부

● 관련법령

[구 개인정보보호법]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제59조(금지행위)
- 제72조(벌칙)

[구 정보통신망법]

-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제71조(벌칙)

● 판결요지

- A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마케팅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오로지 사은행사의 일환이라는 내용으로만 광고를 하였는데, 이처럼 목적을 은폐하고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경품행사 응모권 중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에서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응모가 되지 않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부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위배됨.
- 이 사건 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고,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운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 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B와C는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A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고,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 전해준 행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함.

【시사점】

- ❖ 이 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서 최초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던 사례임.
-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 여부,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등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 따라서 데이터상품 기획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기준으로 동의 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34 : 수사기관 요청에 회원정보 제공

- 색인 : 활용 - 동의
- 출처 : 대법원 2012다105482 판결
- 사실관계
 - A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을 사용하는 이용자이고, B는 원고가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임.
 - 이 사건 카페는 영어 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활용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회원수는 1500명 정도이나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 대부분은 당시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었음.
 - A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C장관이 금메달리스트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해당 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 게시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퍼옴'이라고 표시하여 올렸음.
 - 그 후 C장관은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게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경찰은 B에게 A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그로부터 이틀 뒤 경찰에게 A 등 2명의 포털사이트 id,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을 제공함.
 - 한편 B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간 수십만 건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있고, 통신비밀 전달기구로 이사 1명, 팀장급 직원 1명, 실무자 4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 전달기구가 개별적인 통신자료 요청 건에 대해 별도의 점검회의 등을 하지는 않고 있었음.
 - B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원칙의 예외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엄격한 요건 하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왔음.



● 쟁점사항

-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지 여부
-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공 범위를 심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관련법령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 판결요지

-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인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①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 등을 위하여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②현재 또는 과거에 이루어진 전기통신의 내용이나 외형적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만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은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서면요청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상 신속과 다른 범죄의 예방



4장. 쟁점별 사례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따라 통신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나 법관의 영장 없이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라는 서면요청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B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A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임.

【시사점】

- ❖ 이 사건은 원심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공 범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임.
- ❖ - 대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 다른 법령과의 균형 등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 ❖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 사례 35 : 신용카드 업무수탁사 개인정보 유출

- 색인 : 수집·저장 - 보안조치, 수탁자 감독, 침해신고·통지
- 출처 : 대법원 2018다238278 판결
- 사실관계
 - A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C 등은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소비자이며, D사는 A사로부터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도입 및 리뉴얼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이며, E는 D사의 사업 총괄매니저임.
 - A사는 FDS 개발사업 기간 중 D의 요청으로 FDS 개발작업에 필요한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D에게 제공하였고, E는 FDS 개발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왔음.
 - E는 A사에 투입되어 본사 및 전산센터 등에서 위 리뉴얼 작업을 하던 중 A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A사 회원 약 5,378만명의 정보를 임의로 빼냄.
 - 그 후 E는 위 정보를 대출중개업자 F등에게 유출하였고, 이를 받은 F는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체 운영자 G, 대부중개업체 운영자 H 등 1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판매하였음.
- 쟁점사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만족 여부
 - 개인정보 업무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 이행 여부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조의3(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판결요지

- 피해자 1인당 1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에서 확정함.
-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보안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SB 메모리의 쓰기 기능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러



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시사점】

- ❖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포함)는 법령이 정한 개인정보 안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됨.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수탁자에게 일임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 미이행시 위탁자가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보호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례 36 : 휴면처리된 계정의 개인정보 이용

- 색인 : 폐기 - 동의
- 출처 : 2018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 사실관계
 - A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이고, B는 A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후 상당기간 접속하지 않아 이용 정지된 휴면사용자임.
 - B는 2006. 9. 6. A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고 2009. 8. 11. 광고성 정보수신에 동의하였음.
 - A는 B가 2012. 6. 18.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후 6개월 동안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하여 해당 계정이 2013. 5. 17.부터 2016. 9. 19.기간 중 이용정지 되었음에도 그 기간 동안 B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음(B는 2016. 9. 20.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

● 쟁점사항

- 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면기간과 활성화기간이 구분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이 사건 당시 시행 법률상 3년, 현행 1년)

● 관련법령

[구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조정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3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 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못함.



- B는 2012. 6. 19.부터 3년이 지난 2015. 6. 18.까지 A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A는 2015. 6. 19.부터 B가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한 2016. 9. 20.전까지 B의 개인정보를 최소한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이용하지 않았어야 함.
- 그러나 A는 B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고 B의 이메일 주소로 광고성 정보 72건을 전송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였음.

【시사점】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1년(이 사건 당시는 3년이었으나 현행 1년으로 개정)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함.
- ❖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 외에도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 또는 관리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사례 37 : 도시가스 사용정보와 신용정보 결합 상품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동의, 영업비밀
- 출처 : 데이터스토어 법률상담
- 사실관계
 - A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B는 신용조회업을 각각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A사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연체이력 등의 정보를 B에 제공하고 B가 보유한 신용정보와 결합하여 데이터 상품을 제작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의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 쟁점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사와 B기관이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시가스 사용량, 요금, 연체이력 등이 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 상담요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상호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해당 정보가 사업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사업자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집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 등 처리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A가 B에게 제공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인지에 따라 동의 필요성이 달라짐.
- 개인정보라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아 B가 보유한 정보와 결합·가공하는 것은 가능함.
- 또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처리를 거친 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할 수 있음.
- A는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B는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여야 함.
- 도시가스 연체이력, 사용이력은 개별이력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로 관리된다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로 보긴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려움



4장. 쟁점별 사례

-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시사점】

- ❖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통해 자체 수집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별 도시가스 사용량 등의 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다만, 자체적으로 생산한 데이터가 아닌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 중 단독 또는 결합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 ❖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사례 38 : 수질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해당 여부

- 색인 : 생산, 수집·동의, 가공·결합, 활용 - 소유권, 저작권
- 출처 : 데이터스토어 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X수질환경 측정기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B는 A로부터 수질환경 측정기를 구매한 업체임.
 - X수질환경 측정기는 측정된 수질환경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A사의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은 없으며, 구매자인 B의 저장장치에만 저장됨.
- 쟁점사항
 - X수질환경 측정기로 측정된 데이터의 소유권자
 - A사가 위 데이터를 제공받아 가공하기 위한 요건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20조(배포권)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상담요지
 -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는데, 데이터는 무체물이자 자연력도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며, B가 데이터의 소유권자로서 처분행위(증여, 매매, 권리설정 등)를 할 수도 없음.
 - 다만, 데이터를 저장한 매체가 있다면 그 매체의 소유를 통하여 데이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B로부터 데이터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이전받는다면 이를 가공 또는 결합하는 등 처리할 수 있으며



4장. 쟁점별 사례

독점적인 제공동의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것도 가능함.

- 데이터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자동으로 축적될 뿐인 데이터라면 데이터베이스에도 해당하지 않음.

【시사점】

- ❖ 데이터 자체는 무체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역, 환경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된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



❏ 사례 39 : 웹문서를 수집하여 콘텐츠로 가공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저작권, 기타(손해배상)
- 출처 : 데이터스토어 상담사례
- 사실관계
 - A회사는 IT 개발전문 검색엔진을 구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전세계의 웹문서를 수집하고, 색인과 랭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질의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음.
- 쟁점사항
 - A회사의 법적 지위
 - 수집가능한 웹문서의 요건
 - CCL(Creative commons License)로 제공된 웹문서 사용 방법
 -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범위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상담요지
 - A회사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이므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됨.
 - A가 ①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②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



4장. 쟁점별 사례

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③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등 저작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면책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규정은 원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잘못된 부분이나 길이를 단축하는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이용, 변경불가 등) 하에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며, 부여된 조건만 준수한다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최고형으로 하여 위반행위별로 다양하게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음.
- 저작물의 종류, 침해행위의 종류, 침해의 정도 및 횟수, 침해 목적 및 동기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결정되므로 그 액수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시사점】

-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 송수신의 플랫폼만 제공하며, 그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다만, 면책 규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함.
- ❖ 따라서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저작권 면책규정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0 : 사회적협동조합 승차공유정보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동의, 기타(공공데이터)
- 출처 : 데이터스토어 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향후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 서비스를 통해 차량위치, 고객 위치, 고객 목적지 등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임.
- 쟁점사항
 - 차량위치, 고객 위치, 고객 목적지 등 데이터가 공공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정보와 비공공정보의 관리상 차이
 - 개인위치정보 수집 요건

● 관련법령

[공공데이터법]

- 제2조(정의)
-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국가정보화기본법]

- 제3조(정의)

[공공기관운영법]

- 제2조(적용 대상 등)
- 제4조(공공기관)
-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협동조합기본법]

- 제2조(정의)
- 제4조(법인격과 주소)



[위치정보법]

제2조(정의)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상담요지

-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 또는 출자하는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하는데, A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공공데이터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공공데이터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전자기록물 등을 의미하는데, A조합이 수집하는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없음.
-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및 공표 의무, 정보공개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의무에 구속되지 않음.
- 참고로, 차량 위치, 고객 위치 등은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경우(위치정보사업자) 원칙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하거나 허가(위치정보사업)를 받아야 함.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의무 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시사점】

- ❖ 비영리 조직에서 수집한 정보라고 해서 전부 공공데이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로 취급되어 제공책임관 운영, 정보공개 의무 등의 적용대상이 됨.
- ❖ 비영리 조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가명처리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전문기관 의뢰, 반출시 전문기관의 장 승인 등)를 준수해야 함.



❖ 사례 41 : 데이터 불법 재배포 방지 방법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소유권, 저작권
- 출처 : 데이터스토어 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소비자 불편, 불만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원하는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A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이 A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신들이 사용한 제품(어떠한 제품이든지 무관)에 대한 후기(불편, 불만 사항)를 A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작성하는 것임.
 - A사는 작성된 데이터를 제품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데이터상품으로 제공하고자 함.
- 쟁점사항
 - 소비자 불편, 불만 데이터 수집시 유의 사항
 - 데이터 구매자의 불법 재배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 상담요지



4장. 쟁점별 사례

- A사는 우선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대상 데이터(수집된 소비자들의 불평불만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한 후, 데이터 거래를 진행해야 함.
- A사는 회원들로부터 A사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후기에 관한 저작권법상 권리는 A사에 귀속된다는 점 및 A사는 이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판매되는 데이터에 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함.
-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A사는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에 구체적인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하여 두거나 구체적으로 재배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어길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한 점을 명시함으로써 구매자들이 자사 데이터를 불법으로 재배포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

【시사점】

- ❖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모르고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재산권, 자유권(신체, 표현, 결사 등)의 개념보다 저작권 등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임.
- ❖ 따라서 데이터 상품 거래시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 데이터 상품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 저작권 침해행위가 무엇인지,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 정하여 확실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사례 42 : 위암환자 유전자 분석결과 데이터 활용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저작권, 기타(공공데이터)
- 출처 : 데이터비즈원 법률상담
- 사실관계
 - A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NHISS의 ‘표본연구 DB’ 및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정보자료를 활용한 정책 및 학술연구 등의 지원을 위하여 NHISS(National Health Insurance Sharing Service)를 운영하고 있고, NHISS에서 제공하는 표본연구DB란 공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자료를 말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셋, OPEN API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의료통계정보(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등)를 제공하는 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데이터셋’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료개시일 기준 1년간 진료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한 연구목적의 자료임.
- 쟁점사항
 -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및 이용의 한계
 -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공공데이터 이용 한계
- 관련법령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제12조(이용자)

제14조(이용 승인 등)

제18조(이용승인기간의 연장 등)



제21조(제공 제한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업무 운용지침]

제3조(기본원칙)

제19조(제공신청)

제2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22조(공공데이터 제공 제한)

제23조(공공데이터 제공 중단)

● **상담요지**

- 표본연구 DB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연구기관, 연구수행자로 한정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요건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따라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는 표본연구 DB를 사용할 수 없음.
- 더욱이 표본연구 DB를 기업의 시스템에 편입시켜 홈페이지에서 사용한다면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제3자가 그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제공받은 자료를 해당 연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열람, 제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자료제공이 제한됨.
-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심평원은 위 시스템의 데이터를 외부 플랫폼에 연동하도록 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A사의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심평원 내 의료빅데이터센터는 이용자가 직접 심평원을 방문하여 그 센터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므로 A사의 플랫폼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시사점】

- ❖ 의료정보를 포함한 대부분 데이터들이 개인정보로 전환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자체 생성한 공공데이터를 통계 수준으로 익명처리하여 사실상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제공하고 있음.
- ❖ 따라서 의료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상충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마련한 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3 : 청소년 고민글 데이터 상품화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동의, 아동보호
- 출처 : 데이터스토어 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상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민글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수집·가공한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고자 함.
 - A사는 미리 약관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수집·가공·활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판매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은 고민글 작성날짜, 작성자 연령, 성별, 작성 위치, 고민 키워드, 키워드 순위, 고민글 전문, 데이터 추출 날짜 등임.
- 쟁점사항
 - 고민글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민글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되는지 여부
- 관련법령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 제10조(저작권)
 - 제45조(저작권재산권의 양도)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개인정보보호법]
 - 제2조(정의)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상담요지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때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 청소년이 작성한 고민글의 경우 작성자가 고민거리를 자신만의 표현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며, 일상적인 언어로 구성되어 누가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이루어졌다면 최소한의 창작성도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기 어려움.
- 고민글이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함.
- A사 판매하려는 데이터 중 작성자의 출생년도, 성별, 작성 위치 등은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민글 전문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있음.
- - 따라서 A사는 고민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로부터 수집·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시사점】

- ❖ 고민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다양한 사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 창작물 또는 저작물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저작권 쟁점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4 : 이메일 사용정보 무단 수집 후 활용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제공 - 동의, 정정·삭제
- 출처 : 가공상담사례
- 사실관계
 - A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B는 A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C, D, E 등은 공직선거에 입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임.
 - A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메일 사용정보(메일 수·발신 내역, 수신 메일 중 확인 또는 미확인 내역, 수신거부 내역, 언론 및 시민단체 메일링 수신 서비스 사용 내역 등)를 분석하여 해당 사용자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생산한 후 C, D, E 등에 유료로 제공하였음.
 - B는 C정당에 가입하거나 C정당의 메일링 수신 서비스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로부터 정강정책 및 논평 등 홍보 이메일을 수령하자 C정당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수집한 경위에 대한 열람 및 이메일주소 삭제를 요구하였음.
 - B는 A에게 자신의 이메일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그 이용 및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였음.
- 쟁점사항
 - A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메일 주소가 개인정보에, 이메일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열람, 생산 데이터 삭제 요구에 대한 A의 의무
 - 개인정보 열람 및 삭제 요구에 대한 C의 의무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4장. 쟁점별 사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75조(과태료)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 상담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며,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메일 등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이메일주소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회원 가입 정보, 수·발신 이메일 제목 등과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A는 B의 이메일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특히 B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사상·신념·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당시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데, A는 B로부터 단순히 이메일 서비스를 위한 동의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메일 관련 정보로부터 수집한 민감정보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로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B에 대해 생산한 정치적 성향 데이터는 파기해야 함.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법률로 금지되거나 제3



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따라서 A는 B의 요구에 따라 B로부터 어떠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수집한 이메일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였는지 등을 알려주어야 하고, C는 저장하고 있는 이메일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삭제해야 함.

【시사점】

- ❖ 개인정보 중에서도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법령이 정하는 민감정보는 특별히 보호됨(오직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 근거 2가지의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음).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열람할 수 있고, 그 현황 중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는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관한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됨.



❏ 사례 45 : 해외 여행사의 내국인 개인정보 처리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역외이전

● 출처 : 가공상담사례

● 사실관계

- A는 미합중국에 주소를 둔 여행사, B, C, D 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A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임.
- A는 전세계에서 회원을 모집한 후, 항공권·숙박시설·레스토랑·관광명소 등에 대한 예약 및 결제, 키워드를 조합한 여행코스 매니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통해 국가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별, 계절별 선호 여행지, 여행지별 소비금액, 여행기간 등 데이터를 가공하여 상품화하고자 함.
- A는 우리나라에 자회사인 a사를 설립한 후 인터넷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회원 정보 및 여행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본국에 있는 자사 서버에 저장되며, 그곳에서 다른 정보와 가공·결합되어 판매됨.

● 쟁점사항

- a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가 a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가 수집한 정보를 본국 서버에서 처리하기 위한 요건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9조의13(상호주의)



● 상담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며, a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망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매개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데, 여행일자, 항공기편, 여행목적지 등의 여행 관련 정보는 결제 정보 등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라 볼 수 있음.
- a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국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처리위탁·보관(통칭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 따라서 a사가 본사인 A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전을 넘어 개인정보를 가공·결합하여 상품화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시사점】

- ❖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고,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일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따라서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더하여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제한하는 국가(EU, 중국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상호주의) 해당 국가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 요소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6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제공, 파기 - 수탁자 감독

● 출처 : 가공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생활용품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B는 AI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임.
- A사는 현재 면도기, 방향제 등의 생활용품에 대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구독 물품, 주기, 이용금액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A가는 기존 용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품목의 종류 및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생활용품 유통업체로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해당 업무를 B사에게 위 데이터 분석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 쟁점사항

- A사가 수집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A사가 B사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기 위한 요건
- A사의 B사에 대한 감독의무의 범위
- B사가 처리를 완료한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상담요지

- A사는 면도기, 방향제 등 생활용품 구독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하는 성명,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등은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 A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공·결합할 목적으로 B사에 제공하려면 그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정보주체로부터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서 해야 함.
- A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B를 감독해야 하며, B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용인과 같은 지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B가 생산한 데이터 역시 개인정보를 포함할 여지가 있으므로 A의 감독의무는 B가 생산한 데이터에도 미침.
- B는 위탁받은 업무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B역시 A와는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B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함.

【시사점】

- ❖ 데이터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와 이를 가공하는 주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가공을 위해 데이터를 위탁할 때에는 보호조치 확인, 수탁자 감독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직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위탁자 입장에서는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마련해둘 필요가 있음.



📁 사례 47 : 해킹 사실 숨기다가 가중처벌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 보안조치, 침해신고·통지
- 출처 : 가공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자동차 및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B는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C는 A사의 서버를 해킹하여 회원정보 등 데이터를 유출한 해커임.
 - A사는 자동차 렌트와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를 연계하여 회원이 숙박시설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여행목적지, 여행일자, 기간, 숙박시설 이용 내역 등을 수집한 후 이를 결합·가공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분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C는 A사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위 데이터를 해킹하였고, 해킹한 데이터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A사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A사는 1주일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C와 협상을 하다가 결국 C에게 돈을 주었으나 결국 C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함.
- 쟁점사항
 - A사가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킹에 대한 A사의 책임 판단 기준(보안조치 준수 여부)
 -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A사의 의무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75조(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접근통제)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 상담요지

- A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의 인터넷망 또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 A가 수집하여 가공한 정보는 회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여행목적지 등으로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
- 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①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③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④암호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⑤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기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를 충족해야 함.
- A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안 됨.



4장. 쟁점별 사례

- A가 C의 금전요구에 협상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A는 24시간을 경과하도록 침해사실을 신고·통지하지 않았으므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함.

【시사점】

- ❖ 해킹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이 정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보안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킹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음.
- ❖ 그러나 침해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조치 의무 이행과는 별도의 위법행위로서 책임이 발생함.
-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항상 준수하고, 침해사실 발생시 즉시 법령에 따라 신고·통지해야 그 책임이 면책 또는 경감될 수 있음.



❏ 사례 48 : 포털사이트 부동산 데이터 독과점

● 색인 : 생산, 활용 - 독과점등

● 출처 : 가공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X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주택, 상가 등 부동산의 매매·임대 등에 대한 중개정보(이하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X포털사이트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업체, C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 X포털사이트는 정보검색서비스를 위주로 하면서 부동산 매물 중개, 쇼핑(통신판매중개), 뉴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 플랫폼 시장 점유율은 62% 정도임.
- A는 B로부터 매물정보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업체에게는 같은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음.

● 쟁점사항

- A가 B와의 사이에 다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독과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상담요지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②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에는 당해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위



4장. 쟁점별 사례

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부동산 중개 시장은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는 분야이고, A는 해당 거래분야에서 62%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고, B의 매물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함.

【시사점】

- ❖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면 위와 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사례 49 : 콘텐츠 제공 사업자인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합병

- 색인 :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파기 - 동의, 역외이전, 정정·삭제
- 출처 : 가공상담사례
- 사실관계
 - A사는 국내 법인으로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사로부터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B사는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해외 법인으로서 A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 B사는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 제휴를 모색하던 중 A사를 인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고,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 영상 콘텐츠 구매정보 등을 가공하여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시장을 분석하고자 함.
- 쟁점사항
 - A사가 보유한 회원정보 등을 B사에 이전하기 위한 요건
 - 회원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회원의 정정·삭제 요구권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39조의13(상호주의)
- 상담요지
 - A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는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등으로서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특정 회원의 영상 구매 정보를 통해 사상·신념, 성적 취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4장. 쟁점별 사례

- 민감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①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②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외에 구매 목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①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함.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따라서 A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전되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의 회원정보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해야 함.
- B사는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독일 법인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A와 B의 합병계약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될 수 없음.

【시사점】

- ❖ 민감정보는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말하며, 다른 개인정보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해야 함
- ❖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해외 법인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따라서 해외 법인과 업무협력을 고려할 때에는 해당 해외 법인도 국내법 적용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사례 50 : 맛집 GPS 데이터베이스

- 색인 : 생산, 수집·저장, 가공·결합, 활용 -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 출처 :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가공
- 사실관계
 - A는 자동차용 GPS 단말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B는 A의 경쟁사로서 같은 자동차 관련 GPS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임.
 - A는 전국의 맛집 정보를 모아 '맛집 GPS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한 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맛집을 찾는 운전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맛집 GPS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도록 하였음.
 - B는 위와 같이 제공되는 A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자신이 제작하는 GPS 단말기에 넣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음
- 쟁점사항
 - A의 맛집 GPS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 해당 여부
 - A의 맛집 GPS 데이터베이스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가 무단으로 A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상담요지

-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A의 맛집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의 객체는 될 수 없음.
- 데이터베이스란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A의 맛집 데이터베이스는 식당을 지역별, 메뉴별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고, A는 이를 제작하기 위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을 모방하거나 그 밖에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투입하여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B는 A의 맛집 GPS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단으로 A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A의 맛집 데이터베이스는 A의 GPS 단말기의 차별화된 기능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상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
- B는 A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GPS 단말기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절취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므로 B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

【시사점】

- ❖ 공개된 식당정보라 하더라도 메뉴별, 선호별로 선별하여 제작된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이자 영업비밀로 볼 수 있고, 이를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에는 저작법위반(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음.
- ❖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범위, 사용료,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가공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를 밝히고 해당 데이터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함.



2020 종합안내서 데이터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민 기 영
발행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8층
TEL: 02-3708-5300 / FAX: 02-318-5040
www.kdata.or.kr / www.datastore.or.kr

본 안내서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반실 유통기획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